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1
----------	-----

발의연월일 : 2015. 11. 26.

발 의 자 : 구본승 의원

찬 성 자 : 이정식 의원

김명숙 의원

1. 개정이유

강북구민대상에 강북구의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환경상을 신설하여 환경보전운동의 생활 화와 환경보전의식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북구민대상에 “환경상”을 신설. (안 제3조)

나. “환경상”의 심사기준 신설 (안 제3조의2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상”을 “사회복지상, 환경상”으로 한다.

제3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상은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개선에 기여한 경우

부 칙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민대상의 종류) 구민대상 은 선행봉사상, 모범가족상, 문 화예술상, 체육상, 모범기업인 상, <u>사회복지상</u>으로 구분한다.</p> <p>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 종류 별 심사기준은 각 호와 같다.</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구민대상의 종류) ----- ----- ----- -- <u>사회복지상, 환경상</u>--.</p> <p>제3조의2(심사기준)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환경상은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 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개선에 기여한 경우</u></p>